

1997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1997. 12. .)

運 營 委 員 會

1997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 報告書

1. 監査의 目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사무국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1998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監査期間

○ 1997. 11. 26. (수) [1일간]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마포구의회사무국

4. 監査實施 經過

가. 감사반 편성

구분	감사위원	대상기관	감시장소	사무직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 종 열 [간사] 한 대 운 [위원] 김 성 환, 김 영 식, 유 동 균, 이 진 표, 정 성 우, 한 수 균, 홍 성 환	마포구의회 사무국	운 영 위원회실	임민상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감사대상부서	감사장소	감사 방법	비 고
'97.11.26. (수)	마포구의회 사무국	운영 위원회실	증인선서, 업무보고청취 및 질의	

5. 主要監査 實施內容

- '96. '97년도 예산 불용현황
- 청사관리와 관련한 유지비 및 일용인부임 지급현황
- 일반업무추진비중 행사 및 사무국업무활동비 집행내역

6. 監査結果 處理意見

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현재의 피복비 예산으로는 제대로 된 피복을 구입할 수 없는 실정인 바, 속기사 피복비 예산을 현실화하든지 예산이 여의치 않을 경우 매년 피복을 구입하지 않고 2년에 한번씩 피복을 구입하는 방안등을 강구하여 속기사가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에 임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의회청사내 각종 계단에 안내판을 제작, 개척하여 의회를 찾는 내방인이 쉽게 증별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바람.
- 우리 경제가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점을 인식하여 앞으로 모든 예산집행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바람.

나. 처 리 의 견

-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사무국장이 시정 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98. 1.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함

1997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1997. 12. .)

總務財務委員會

1997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 報告書

1. 監査의 目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고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1998년도 예산심의틀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監査期間

1997. 11. 26 (화) ~ 1997. 12. 2 (화) [7일간]

3. 監査實施 對象機關

- 마포구청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 동사무소 (망원1동, 신수동, 노고산동)

4. 監査實施 經過

가. 감사반 편성

구분	감사위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사무직원
총무재무 위원회	[위원장] 김 효 칠 [간사] 김 세 창 [위원] 김 성 환, 김 중 열, 김 평 전, 심 재 창, 유 남 렬, 이 진 표, 정 만 직, 한 수 균	기 획 실, 총 무 국, 재 무 국, 동 사무 소	총무재무 위원회실 및 동사무소	임민상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감사대상부서	감사장소	감사방법	비 고
'97.11.26. (수)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총무재무 위원회실	증인선서, 업무보고청취 및 서류감사	
'97.11.27. (목)	총무과, 민원봉사과, 사회진흥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총무재무 위원회실	증인선서, 업무보고청취 및 서류감사	
'97.11.28. (금)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총무재무 위원회실	증인선서, 업무보고청취 및 서류감사	
'97.11.29. (토)	망원1동	망원1동 사무소	증인선서, 업무보고청취 및 서류감사	
'97.12. 1. (월)	시수동, 노고산동	신수동, 노고산동 사무소	증인선서, 업무보고청취 및 서류감사	
'97.12. 2. (화)		총무재무 위원회실	감사감평 및 종료	

5. 主要監査 實施内容

<區 廳>

부서별		주요 감사 실시 내용
기획예산 담당관	기 획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 유인물 발간 지출내역(일반수용비) ○ 예비비 지출내역 ○ 마포개발공사 추진실태 및 예산집행 현황 ○ 일반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 및 사용내역
	감 사 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감사원, 서울시, 자책)감사, 조사 내용 및 조치내역 ○ 공무원 부조리 적발및 조치현황
	문 화 공 보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6, '97년 각종행사 개최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 ○ 구민의날 행사에 소요된 총체적 예산 및 집행의 세부적 내용 ○ 문화재 관리비용(보수비 등) 지출내역 ○ 지역, 일간신문 구독 및 예산집행 현황 ○ 마포문화원 예산, 장비 및 기타 지원현황 ○ 홍보활동비 사용내역
총 무 과	총 무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농수산물 유통센터 개관및 구민의 날 행사시 총 행사비용 ○ 들팽크 에프코팅 및 보수비 사용내역 ○ 각동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사업비 지출내역 ○ 구민체육대회 행사경비 지출내역 ○ 차량관리 현황 ○ 구민회관철립 추진실적 및 특별회계 적립금 현황
	민 원 봉 사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사 회 진 흥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마을 소득지원금 및 미수금 현황 ○ POOL 보조 지급내역 ○ 사회단체 지원에 대한 전액, 일의보조금 지급현황
	민 방 위 재 난 관 리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공동점호 관리실태 ○ 민방위훈련, 불참자 조치현황 ○ 각동 민방위 장비현황 및 장비구입 소요예산 내역

부서별		주요감사 실시내용
재 무 국	재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공사중 설계변경된 내역과 취득가격 변경후 가격및 업체, 대표자 현황 ○ 행정재산 관리실태 및 예산집행내역 ○ 국, 시, 구유지 매각현황 ○ '85. ~ '87년도 현금 보관현황 ○ 수입증지 판매수입 현황('86년, '87년)
	세무1과, 세무2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7년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 현황 ○ '87년도 종합건설회사(법인)가 신축 준공한 연건평 600㎡ 이상 2,000㎡미만의 건축물의 시공업체 도급계약서 건물별 취득세 및 등록세 부과내역 ○ 우리구 자립을 위한 세원개발 방안과 종합토지세와 담세세의 비교현황 ○ 세외수입 부과현황과 징수실적
	지적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7년 토지거래신고 실적

〈洞事務所〉

부서명	주요감사 실시 내용
망원 1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공공요금 납부현황 ○ 저소득주민 결연사업실적 ○ 민방위 장비관리실태 및 대장정리 현황 ○ 통장수당 지급현황 ○ 재활용품 매각대금 지급내역 ○ 공공용 쓰레기봉투 지급, 사용 적정여부 ○ 각종 고지서 송달현황 ○ '97년도 무허가건물 전수조사 현황 ○ 전언통신문 및 FAX 접수현황
신수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요금(전화요금 등) 납부현황 ○ 무허가건물 전수조사 현황 ○ 저소득 주민 결연사업실적 ○ 통장수당 지급내역 및 회의참석부 관리실태 ○ 재활용품 매각대금 지급현황 ○ 민방위훈련통지서 관리실태 및 훈련참석자 통계관리 적정여부 ○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추진실적 ○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지급및 새마을소득지원금 지급현황 ○ 반상회 개최및 반상회시 주민 건의사항 처리현황 ○ 지방세 고지서 송달 적정여부 ○ 생활체육교실 운영실태 ○ 동사무소 비품출납 운용카드 정리실태
노고산 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경쟁력 10% 향상을 위한 계획수립여부 및 실천의지 ○ 지방세목중 종합로지세및 자동차세 징수현황 ○ 각종 고지서 납세자 송달 실태 ○ 새마을소득지원금 체납현황 ○ 소규모 편익사업 시행현황 ○ 민방위훈련통지서 관리실태및 훈련참석자 통계관리 적정여부 ○ 동사무소 공공용 쓰레기봉투 지급관리실태 ○ 동 재활용추진협의회 구성여부 ○ 거택·자활보호자 노령수당, 목욕비, 이·미용료 지급실태 ○ 노인교통신당 지급실태 ○ 취로사업 추진실태 ○ 통장회의 참석 서명부 관리 및 통장수당 지급실태 ○ 공공요금(전화요금 등) 납부현황

6. 監査結果 處理意見

가. 시정및 처리 요구사항

企 劃 室

■ 監査擔當官

- 민원담당공무원과 일부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중식시간(12:00 ~ 13:00)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에도, 11시 30분부터 식사를 받기로 자리를 이석하는 사례가 많아 민원인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바, 직원 지도감독을 철저히하여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동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인 동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바, 구청 각 부서 감사도 병행실시토록 하여 업무처리와 관련한 부조리가 발생치 않도록 하고, 특히 보건소 아원복소 운영전반에 관해서는 수시감사를 실시하여 복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불편절한 사례와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는 지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람.

■ 文化公報擔當官

- 예산은 원칙적으로 당초 편성된대로 집행하여야 함에도 예산이 부족하다 하여 부족예산을 구청장 방침으로 라 예산을 전용 사용한 사례는 추후 시정되어야 하겠음.(어머니 합창단 관련 예산)
- 구민의 날 행사시 낭비적인 요소는 철저히 배제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함으로써 현재의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 망원점 관리를 위해 지도원(방법원)을 2인1조로 3교대 근무하고 있는 바, 지도원 6명에 대한 인건비가 1년에 약 1억원이 소요되는 데 사실상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 망원점관리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바람.
- 일반업무추진비 집행내용을 보면 예산집행의 회계처리상 기본적인 요식행위절차가 미흡하니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總務局

■ 總務課

- 공무원 친절도 자체평가에서 공무원이 전보다는 친절해졌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아직도 공무원이 불친절하다는 여론이 많으니, 철저한 직원교육으로 대민 친절봉사에 관심을 기하기 바람.
- 증식시간 전직원이 일시에 식사함으로써 인해 실제 증식시간에 민원인이 용무를 볼 수 없는 실점이므로 증식시간 구내식당 배식을 적절히 안배, 교대식사로록 하고 보안당번제의 철저한 시행과 업무대행자를 지정, 민원인의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아울러 증식시간 이전부터 식사를 이유로 자리를 이석하는 사례가 없도록 전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람.
- 동사무소 감사시 라 동 문서를 서류철에 편철해 놓고 있는 사례는 동직원의 근무기강이 해이해졌다고 사료되는 바, 동 직원에 대한 정신교육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바람.
- 통장 회의수당 지급에 있어 각동이 일정한 기준이 없이 구구각색인 바, 통일된 기준안을 마련 동사무소에 시달로록 조치하기 바람.
- 각종 행사및 홍보용 현수막은 거의 대부분 일회성인 만큼 경제사정이 어려운 현 실정을 감안, 현수막 제작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줄여 나가도록 하기 바람.
- 동사무소 관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사고를 구에 동향보고 하여 신속하게 사건, 사고를 처리코록 하고 있는 데, 동으로부터 동향보고된 내용중에는 동향보고사항이 아님에도 보고하므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바, 총무과에서는 동향보고의 본 취지를 살려 불필요한 동향보고는 지양토록 조치하기 바람.

■ 民願奉仕課

- 업무추진비 예산집행시 관련 증빙서류 감사결과 예산집행일자가 다르게 정리되는 등 회계관계 서류정리가 미비하니 차후 예산집행과 관련한 모든 증빙서류는 명확하게 작성, 정리토록 하기 바람.

■ 社會振興課

- 새마을소득지원 미수금 정리가 미흡하니, 미수금에 대한 채권확보 등 새마을소득 미수금정리 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民防衛災難管理課

- 민방위 교육훈련 참석자 통계관리에 있어 교육참석율 99%라는 통계 수치는 신빙성이 없는 통계로 차후에는 정확한 통계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하고, 각동 민방위교육훈련 참석필증 관리도 미흡하니 각동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차후 이러한 사태가 없도록 하기 바람.

財務局

■ 稅務1課, 稅務2課

- 각종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법인이 제출한 도급금액으로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할 경우에 각 업체 형평성을 유지토록 하기 바람.

洞事務所

■ 望遠1洞

- 위법건축물 또는 부설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 사용하였을 경우에 시정조치 하고 구청 주관부서에 시정완료 보고시 근거자료로 사진을 첨부 보고하고 있는 바, 구청에 사진 원부를 발송하고 동에는 사진 복사본을 보관하고 있는 데 복사된 사진은 유관으로 도저히 확인할 없으니 동 보관부 사진도 원 사진을 첨부토록 하기 바람.
- 민방위교육훈련 참석자 참석율 통계가 신빙성이 없으니, 차후 정확한 통계 작성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참석필증 보관상태가 극히 불량하니, 앞으로 관리에 철저히 하기 바람.

- 주민의 건의사항, 불편사항, 동사무소 방문 구 간부의 지시사항을 메모하여 처리할 수 있는 대장이 비치되어 있지 않으니 앞으로는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 즉시 처리 가능한 것은 즉시 처리하고 동에서 처리 곤란한 사항은 구청에 건의, 처리토록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바람.

2) 新 水 洞

-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 모든 분야에서 절약하는 의식을 갖도록 하고 특히 공공요금(전화요금 등)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 바, 사적 전화사용을 억제토록 하기 바람.
- 국가경쟁력 10% 늘리기 추진실적이 1건도 없는 바, 모든 행정이 전신행정이 되어서는 안되며 실질적인 행정업무 추진이 되도록 하기 바람.
- 2002년 월드컵 유치 홍보용 현수막을 대형 건물주에게 기증토록 유도하고 있는데, 기증된 현수막을 보면, ○ ○식당등의 상호가 표기되므로 인해 공공성보다는 개인사업 PR용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이를 시정토록 하기 바람.
- 지방세 징수실적이 저조하니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새금징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고지서도 납세자에게 정확히 송달이 되어야만 채납이 감소될 터인데, 고지서 송달상황표 수령인란을 보면 수령자 날인이 불명확하거나, 아예 송달부에 누구에게 송달했는지 날인조차 되지 않은 경우도 있음.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동장은 직원 교육을 실시하여 지방세 징수를 제고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3) 老 姑 山 洞

- 통장 회의수당 지급시 회의 참석부 서명날인과 지급조서상의 서명날인이 상이하여 수당지급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정확한 수당지급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재활용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는 바,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재활용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쓰레기 공공용 봉투가 개인 가정용 봉투로 부점사용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나. 건의사항 (동사무소)

- 망원1동 청사 옥상에 생활체육교실, 주민편의시설등을 설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증축 요망에 대한 건의는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기 바람. ⇒ 망원1동
- 노고산동 청사부지는 사유지로서 구유지로 이관 요청후 현재 동사무소 옆 여관건물 (대지47평)을 매입, 복합 동청사를 신축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적극 협의 요망 ⇒ 노고산동

다. 처리의견

- 본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및 처리 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 또는 조치하고 그 결과를 '98. 1.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며, 건의사항은 금후의 정책입안, 수립및 시행과정에 적극 반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其他 特記事項

○ 수범사례

- 수범공무원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담당업무	수범내용	비고
신수동	별정7급	서길자	사회, 가정복지, 취로	1997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본인의 담당업무는 물론 동료직원의 업무협조 사항도 책임감있게 처리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되고 있음	구에서 서울시장포창 상신할 것을 요청 함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997. 12.

시 민 보 건 위 원 회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청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개선하여 구민편익을 증진하며, 효율적인 구정 수행과 자치입법 활동에 활용하고, 1998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감사기간

1997. 11. 26. (수) ~ 1997. 12. 2. (화) [7일간]

3. 감사실시대상기관

- 마포구청 (시민국, 보건소)
- 동사무소 (공덕제1동, 도화제2동, 상암동)

4. 감사실시경과

가. 감사위원회 편성 및 감사장소

구분	감사위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사무직원
시민보건 위원회	위원장 박영길 간사 유동균 위원 김순금, 김유현, 김충환, 이웅원, 이인구, 이종일, 한대운	시민국, 보건소, 공덕제1동, 도화제2동, 상암동	시민보건 위원회실, 공덕제1동사무소, 도화제2동사무소, 상암동사무소	조황현

나. 감사일정

감사일	감사대상	감사장소	감사방법
'97. 11. 26. (수)	상 압 등	상압동사무소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서류 감사
'97. 11. 27. (목)	도 화 제 2 등, 공 벽 제 1 등	도화제2동사무소, 공벽제1동사무소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서류 감사
'97. 11. 28. (금)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시 민 보 건 위 원 회 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서류 감사
'97. 11. 29. (토)	위 생 과, 산 업 과	시 민 보 건 위 원 회 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서류 감사
'97. 12. 1. (일)	환 경 과, 청 소 과	시 민 보 건 위 원 회 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서류 감사
'97. 12. 2. (화)	보 건 소	시 민 보 건 위 원 회 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서류 감사

5. 주요감사 내용

감사대상기관	주요 감사 내용
사회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용품 관리 실태 ○ 저소득층 자매결연사업 운영 실태 ○ 직업소개소 지도 감독 실태 ○ 의뢰보호대상불금 체납자 관리 실태 ○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실태 ○ 취로사업 운영 실태 ○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 실태
가정복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건강진단 운영 실태 ○ 노인 취업알선 실태 ○ 청소년독서실 운영 실태
위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신청후 반려된 위생업소에 대한 불법영업 단속 대책 ○ 목욕업소 지도 감독 실태 ○ "좋은 식단체" 운영 실태 ○ 자동판매기 위생관리 실태 ○ 집단급식소 위생검사 실태 ○ 무허가 소규모음식점 위생검사 실시 대책 ○ 두부제조업체 위생관리 실태 ○ 위생과 업무추진비 격정 사용 여부
산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실태 ○ 농산물 도농직거래 실태 ○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영 실태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홍보 대책 및 이행 방안 ○ 환경병예방접종률 제고 방안

감사대상기관	주요 감사 내용
환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 관리 방안 ○ 유류저장탱크 관리 실태 ○ 정화조 관리 실태 ○ 정화조청소대행업자 지도 감독 실태 ○ 무허가 공해업소 단속 실태
청소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포구 재활용센터 운영 실태 ○ 재활용품 대면수거 실태 ○ 청소수하차 관리 감독 실태 ○ 환경미화원 관리 실태 ○ 환경미화원 사역카드 관리 실태 ○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체납자 관리 실태 ○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 ○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대한 홍보 대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 관련 예산 미집행에 대한 집행 대책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내 안내표지판 부착 여부 ○ 보건소 업무에 대한 홍보 대책 ○ 방역소독약품 관리 실태 ○ 병·의원적출물 관리 실태 ○ 국민건강증진법상 위반행위 단속 대책
동사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보호대불금 관리 실태 ○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홍보 실태 ○ 중량당 가격표시제 점검 실태 ○ 공중화장실 관리 실태 ○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체납자 관리 실태 ○ 긴급구호양곡 관리 실태 ○ 부당인 단속 실태

감사대상기관	주요 감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취업알선 대책 ○ 풍건병예방접종률 제고 방안 ○ 개인서비스요금 관리 실태 ○ 청소수하차 관리 실태 ○ 노인교풍수당 전액 지급 방안 ○ 취로증 관리 실태 ○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 관리 실태 ○ 노인건강진단 운영 실태 ○ 환경미화원 사역카드 관리 실태

6.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시경 및 처리요구사항

(1) 시민국 소관

(가) 사회복지과 소관

- 동에서 보관중인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카드를 제때에 작성하지 않는 등 카드 관리가 부실한 바, 확인하여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 저소득층 자매결연 명단이 장부상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자매결연 이후 실적에 대한 기록이 없어 전시효과적인 행정이 될 우려가 있음.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내실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액에 대한 상환률('97. 11. 3. 현재)이 19.62%로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의료보호대불금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체납처분" 규정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많이 있음. 장기 체납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 정지와 결손처분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 취로증을 취득자가 휴대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에서 일괄 보관하여 한꺼번에 작성하는 등 관리가 소홀한 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나) 가정복지과 소관

- '96년도에 노인건강진단비로 국고보조금 7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불용액이 294,740원임. 동 보조금을 매년 사용치 못하고 반납하고 있어 연차적으로 보조금이 감액되고 있는 바, 전액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 청소년독서실 운영 관련 '98년도 예산액을 보면 '97년 대비 77%가 증가한 반면 학생이용률은 '95년도 이후 연평균 20% 정도가 감소하고 있음.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을 수립하여 청소년 공부방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것. 특히 위치선정에 문제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용률이 저조한 망원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는 주민복지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하여 '98. 1. 15. 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

(다) 위생과 소관

- 목욕업소 수질검사시 업주에게 유리하게 채수하는 경우가 있는 바,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여 부정의 소지가 없도록 할 것.
- 허가신청후 반려된 위생업소가 반려된 기간중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는 바,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할 것.
- 자동판매기 위생 관리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바, 각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 두부제조업체에서 포르말린을 사용하여 부패를 방지하는 사례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 무허가 소규모음식점에 대한 위생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불량하고 비위생적인 사례가 지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위생과 업무추진비 지출시 현금 지급('97. 1. 20. 위생감시활동을 위한 50만원 정액 지급 의 2건)한 사례가 있음.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지출될 수 있도록 할 것.

(라) 산업과 소관

- 개인서비스요금 관리에 있어서 각종마다 통일된 양식이 없고 관리도 부실한 바, 확인하여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 농수산물 원산지표지제가 홍보 부족으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 바, 식별이 될 수 있도록 홍보지표 업소에 붙이는 등 이행 방안을 강구할 것.
- 방견병예방접종을 조사된 개의 20%정도만 실시하였는 바, 방견시 문제가 발생될 염려가 있으므로 대책을 수립하여 모든 개에 접종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12월1일 현재 우리구의 도시가스 사용가구수는 전체의 69%로 도시가스사업 기금 적립금은 10억7천만원임. ('96년도 용자금은 4737만원, '97년도 4020만원으로 용자실적이 저조함) '98년도 적정시기(도시가스 사용가구수 70% 달성시)에 관련 조례를 폐지하여 적립금을 타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마) 환경과 소관

- 경화조 청소후 청소비와는 별도로 사례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바, 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이러한 행위가 없도록 할 것.
- 일반주택에서 불법으로 유류저장탱크를 설치하여 유류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정확히 조사하여 조치토록 할 것.
- '93년 이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동차·시설물 포함) 현황을 보면 22,810건 926백만원으로 징수율이 89.7%로 낮은 실정임.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경화조의 설치기준과 경화조의 구조, 규격, 성능 등에 미달하는 경화조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경화조 관리 업무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종합적인 경화조 관리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98.1.15. 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

(바) 청소과 소관

- 청소수하차 수리비를 수하차 수량 및 수리 여부 확인도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바, 지급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 공중화장실 기물 파손이 많은 바, 파손 실태를 파악하여 수리할 것이며, 파손 즉시 수리할 것.
- 환경미화원이 근무중 음주를 하거나 텀을 요구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종종 적발되고 있는 바, 근무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여 조치토록 하고,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 쓰레기무단투기과태료 체납자 관리에 있어 동에서는 체납여부 확인이 안되고 있음. 구에서 정기적으로 동에 체납자 명단을 통보하여 동에서 체납자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대한 홍보실적이 매우 미흡함. 효율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설치 관련, '97년도 세출예산에 장비구입비와 시설비로 16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전혀 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음. 무리한 사업계획과 관계기관과의 소극적인 협의등으로 막대한 예산을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시키는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

(2) 보건소 소관

- 병·외원이 적출물을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 바, 실태를 파악하여 시정토록 하고,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치 않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
- 국민건강증진법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실적이 매우 낮음. 효율적인 단속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 동에 보관중인 방역소독약품의 관리가 매우 부실함. 방역소독약품은 독극물인 점을 감안하여 시진장치 마련 및 철저한 통제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
- 건물 각종에 전체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여 몸이 불편한 민원인이 안내표지판을 보고 편리하게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97년 3/4분기 보건분야 여론조사 결과 지역주민 대다수는 아직도 보건소가 예방접종과 전염병 관리를 해주는 곳으로 잘못 인식하고, 조사대상중 아현진료소 개소를 모르는 경우가 60.5%나 되고 있어 홍보대책이 결실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3) 동사무소 소관

- 증량당 가격표시제를 장부상으로는 업소에서 이행하고 있는 걸로 기재되어 있으나 업소에서는 g당 표시를 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음.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이행토록 조치할 것. (상암동, 공역제1동)
- 환경미화원사역카드 관리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날인란에 청소담당의 날인을 하거나 며칠을 모아서 한꺼번에 날인한 흔적이 있는 등 관리가 소홀한 바,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상암동, 공역제1동)
- 방견병예방접종을 조사된 개의 20% 정도만 하고 전수조사도 정확히 하지 않아 방견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바, 모든 개에 접종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상암동, 공역제1동)
- 개인서비스요금 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는 바, 계획을 수립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 (상암동)
- 청소장비대장을 만들어 청소수하차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장이 없는 등 관리가 부실한 바, 대장을 만들어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상암동)
- 증량당 가격표시업소를 장부에만 기재하고 점검 실적이 없는 바,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이행토록 조치할 것. (도화제2동, 공역제1동)
- 노인교통수당이 홍보 부족으로 미지급분이 발생하는 바, 전액 지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도화제2동)
- 취로증을 취토자가 휴대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에서 일괄 보관하여 한꺼번에 작성하는 등 관리가 부실한 바, 방안을 강구하여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 (도화제2동, 공역제1동)
- 동사무소 창구에 마련된 노인 취업알선 실적이 거의 전무한 실정임. 개선책을 마련하여 노인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공역1동, 도화2동, 상암동)

나. 건의사항

국민건강증진법상의 위반행위 단속시 보건소에는 사법권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바,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철저한 단속이 될 수 있도록 할 것.

다. 처리의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가 시정 처리하고 그 결과를 1998. 1. 20. 까지 마포구의회에 보고토록 할 것.

1997年度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1997. 12 .)

都市建設委員會

1997年度行政事務監結果報告書

1. 監査 目的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점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된 구행정업무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동시에 자치입법 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1998년도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심사 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

2. 監査 期間

○ 1997. 11. 26.(수) ~ 1997. 12. 2.(화) [7일간]

3. 監査實施對象機關

- 마포구청(도시정비국, 건설국)
- 동사무소(신공덕동, 도화1동, 망원2동)

4. 監査實施經過

가. 감사반편성

구분	감사위원	대상기관	감사장소	사무원
도시건설 위원회	위원장 박상수 간사 채재선 - 위 원 - 권오범, 김영식 박동철, 배상대 유용봉, 윤명규 이찬규, 정성우 한현덕, 홍성환	도시정비국, 건설국 신공덕동 도화1동 망원2동	도시건설 위원회실 동사무소	박준배

나.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감사대상부서	감사장소	감사방법	비 고
'97.11.26.(수)	주 택 과 재개발과 도시점비과	도시건설위 원회실	현황보고청취 자료요구 점책질의	
'97.11.27.(목)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	"	
'97.11.28.(금)	건설관리과 토목과	"	"	
'97.11.29.(토)	하수과 공원녹지과	"	"	
'97.12. 1.(월)	도화1동 신공덕동	동사무소	"	
'97.12. 2.(화)	망원2동	"	"	

5. 主要監査實施內用

가. 소관별 실시내용

1) 도시정비국소관(주택과, 재개발과, 도시정비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주 택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주거대책비 지급현황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문제점 및 향후대책 ○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 방지 및 사전예방 대책 ○ 전세임자금 홍보 미흡 및 미상환자 회수 대책
재 개발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현장 지도 감독 및 안전망 설치 문제점과 향후 대책 ○ 재개발사업 추진시 구역변경등 민원 발생에 대한 대책
도시 정 비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출간판 허가후 허가기간내 단속 이유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향후 계획
교 통 행 정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초등학교 주변 펜스설치 부위점 및 일방통행구역이 지역여건에 맞지않게 지적되어 있는 곳에 대한 향후 대책 ○ 관내 일방통행로의 불법주차 단속 ○ 무허가 자동차 정비업소 폐기를 배출 단속에 대한 유관과(환경과)와 유기적인 단속대책 강구
교 통 지 도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법주차차단속과태료(50만원)이상 고액 상습 채납자 징수에 따른 재산압류 업무에 만전을 기할것. ○ 공익근무요원 교육 및 기강확립 철저 ○ 공익근무요원 불법주차 단속보조시 관내를 이탈 하여 단속 금지 ○ 건축물 부설 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 설치의 문제점에 대한 향후 대책
건 축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준공완료후 불법 용도변경 주차장을 점포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대책 ○ 장기 미준공건물에 대한 대책 ○ 건축 허가는 행정 부서에서 하고, 그에따른 공사(레미콘)차량 단속은 경찰에서 하고 있어 주간 화물 차량 도심 통과 통행제한 단속으로 공사를 야간에 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점과 향후 민원 대책

2) 건설국소관(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

사 항 별	주 요 감 사 실 시 내 용
건설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판매점 허가 용도 이외의 판매행위 단속 및 향후 대책 ○ 도로점용료 부과 소급적용 실패 ○ 잡종 재산증 사실상 하천부지에 속한 점용료 부과 실패 ○ 유선방송 유선주 설치 현황
토 목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상용인부임 지급 ○ '97.1월부터 10월30일 각종공사 예산 지출(발주)내역 ○ '96년도사업중 사고이월 현황 ○ 최근 3년간 발주한 공사중 외지업체와 우리구 관내 업체가 수주한 현황
하 수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상용인부임 지급 ○ '97. 1.~10. 30일까지 각종공사 예산내역과 지출(발주) 현황
공원녹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으로 식재한 각종나무 식재후 사후관리 현황 ○ 하절기(5~6월) 수목 해충방지 대책 ○ 구 소유 해충 방지 각종장비 관리 실패

6. 監査結果處理意見

가. 시집 및 처리 요구사항

1) 도시집배국소관

가) 주택과소관

-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주거대책기 지급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있는바,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것.
- 신발생 무허가 건물 사전예방 단속이 제대로되지않아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바, 주민에 대한 홍보강화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주민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할것.

- 저소득층 전세금 융자 실적이 저조한 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필요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저소득층 전세융자금 장기 미상환자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음, 미상환자에 대하여 남부등록뿐만 아니라 보증인에게도 상환이행고지등을 통하여 미납자에 대한 관리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
- '97년도 예산에 재건축 홍보지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10월경 1회 발행된바 있음, 본 홍보지는 년초에 발행하여 당해년도 재건축 소식이나 법령등 필요한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공보하는데 목적이 있는 바 시정토록 할 것.

나) 재개발과 소관

- 관내 재개발 건축현장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현장 안전망 설치등 현장 확인 행적을 통하여 민원발생소지를 줄이고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 할 것.
- 재개발사업 추진시 사전에 사업 타당성 검토 미비로 사후 구역변경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는 바, 재개발사업 추진시 이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시행 할 것.
- 재개발 소식지 발간과 관련하여, 배포후 홍보효과에 대한 분석을 전혀하지 않고 있음. 재개발에 관심있는주민에게 보다 필요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효과 분석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
- 주택재개발 구역지정등 도시계획안 공람공고시 주민들이 다수 접할수 있는 입간지를 선택하여 이해관계인들이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폭넓게 부여하고 주민들이 지역개발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추진 과점을 알 수 있도록 개선 할 것.

다) 도시경매와 소관

- 불법 광고물 및 무허가 돌출간판 단속은 거리질서 확립 및 도시기판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적기에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시정토록 할 것.
- 도심재개발 구역 변경지정등에 따른 공람 공고시 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입간지를 선택하여 이해관계인들이 의견제출을 할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부여하고 민원발생의 소지를 줄일 것.
- 채비지 대부료와 변상금에 대한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함,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징수율을 높일수 있도록 할 것.

라) 교통행위와 소관

- 초등학교 주변 주차금지용 펜스 설치시, 행인 및 차량통행등 주변환경등을 고려하여 설치 하도록 하되 주민 의견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할것,
- 일방통행로 지정은 주변환경과 맞도록 검토 하고 사전에 주민의 견수렴 및홍보를 통하여 민원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
- 관내 일방통행로에 장기 불법정차로 인하여 일방통행로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안되는 지역이 있는바, 이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립 할 것.
- 공영주차장 건립에 따른 계획수립시 사전검토가 불충분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예산을 낭비하는 사태가 지적되고 있는바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경제성등을 분석하여 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것.

마) 교통지도와 소관

- 주정차 과태료 50만원이상 고액 및 상습채납자 징수를 재고물 위하여 채납자 재산압류등 특별대책을 수립시행 할 것.
- 건축물 부설 주차장 및 기계식 주차장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불법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수립 할 것.
- 공익근무요원들의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보조시 주민에 대한 불친절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단정한 복장으로 친절한 근무 자세가 정립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기 바람.
- '97년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97.10.31현재 38.7%로 매우 저조함. 징수를 재고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 할것.

바) 건축과 소관

- 준공 이후 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하여 식당,점포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등 대책을 강구할것.
- 관내 장기 미준공 위법 건물이 증가 하고있는 바. 위법 건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 할 것.
- 건축 허가는 행정부처에서 하고, 그에 따른 공사(래미콘)차량단속은 경찰에서 하고 있어 주간 화물차량 도실통과 통행제한 단속으로 공사를 야간에 하여야 하는 문제점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대책을 수립 보고 할 것.

- 동점기 대형 공사장 및 사설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 조치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 할 것.

2) 건설국 소관

가) 건설관리과 소관

- 도로점용료 부과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있는 바, 부과 징수에 철저를 기 할 것.
- 관내 노상 가로판매점 허가외 음식물(떡볶이, 우동, 오뎅)등 노상조리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단속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특히 신촌역과 귀인로 주변 도로변에 비위생적인 음식물을 팔거나, 상품을 진열판매하는 노점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바, 취약지역에 대하여 정비대책을 마련 할 것.
- 공공용지(도로, 하천)에 대한 '96 ~ '97년도 점용료 채납율이 '97년도 13% '96년도 9.0%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징수를 재고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 할 것.

나) 토목과 소관

- 토목과 상용인부의 근로기준법(제54조)에 의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지급대책을 강구 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할 것.
- 각종토목공사시 당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이 매년증가하고 있는바, 공기부족과 보상협의 지연등으로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년초에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할 것.

다) 하수과 소관

- 하수과 상용인부의 근로기준법(제54조)에 의한 임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지급대책을 강구 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할 것.
- 각종 소규모 공사시 원청업자가 합법을 가장하여 하청 업체에 게 공사를 맡기는 행위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원청업자에게 제재 조치를 강구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태가 없도록 시정 할 것.
- 우기철 수해로 인한 도로와 가옥침수시 비상연락 체계의 미비로 출동시간이 지연되고, 양수기동 장비이동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바, 우기철 종합대책을 재점검하여 비상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라) 공원녹지과 소관

- 예산 사업으로 식재한 나무가 사후관리 부실로 고사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할것.
- 하절기(5~ 6월)수목 병해충방제 업무가 계획성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철저한 계획수립으로 효율적인 방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 할것.
- 구소유 방제장비의 철저한 정비로 적기 방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방제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를 강화 할것.

3) 동사무소 소관

○ 동사무소 공통

- 연말잔여예산을 집행하기 위하여 양호한 보도블럭을 교체하는 사례가 많은바,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교체토록 할것.
- 불법주정차 단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집행이 동사무소 전공무원에게 수당형식으로 일률적으로 집행되고 있는바, 이에대한 개선책을 마련토록 할것.
- 보안등 관리대장 작성시 고장 신고후 즉시 수리한 것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되어 있음, 신고후 미수리된 보안등도 발견되고 있는 바, 보안등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 인도위에 차량이 불법주정차하여 보도블럭이 파손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음, 적발즉시 단속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할것.
- 주차단속시 단속공무원이 동행하지 않고 공익요원에게 주차단속을 맡기는 사례가 있음,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조치 할것.
- 주정차 단속 스티커 수불대장 정리부실 및 결재 누락 등의 사례가 많음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 할것.

나. 處 理 意 見

-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중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또는 처리하고 그 결과를 '98년 1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함.